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26
----------	-------

발의연월일 : 2025. 8. 6.

발 의 자 : 민병덕 · 조계원 · 박홍배
김문수 · 김남근 · 김현정
정진욱 · 박해철 · 전용기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자산과 관련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논란이 되어 왔음.

선별적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평한 지급이 가능함.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장기 채무를 탕감하는 경우 사업자인 수혜자는 채무탕감 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면 과도한 세제상 이중혜택을 배제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소멸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부채의 감소액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 나.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서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함(안 제50조제1항단서 신설).
- 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안 제119조제12호하목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소멸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부채의 감소액이 있는 경우 해당 부채의 감소액은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받은 경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2호타목 및 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파.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하. 가목부터 과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황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1. (생략)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카. (생략) <u><신설></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받은 경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 ----- ----- 가. ~ 카. (현행과 같음) <u>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u>
---	--

[illegible]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1. (생략)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카. (생략)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

12. -----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파.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황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신 설>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황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